'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2. 29(수) 함명섭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2. 3. 8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3. 9(금)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함명섭 의원)

-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- 저소득 농업인의 정의(안 제2조)
 -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
- 지원사업(안 제5조)
 - 부엌개량, 화장실개량,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
 - 관정개발,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
 - 비닐하우스 자재, 과수 지주목, 비료 및 농약 등 농업용 자재구입 등
 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지원기준(안 제6조)
 -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경작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
 - 주거환경개선사업, 소득증대사업, 농업용 자재구입 등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
 - 연간 1회 300만원 이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농업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저소득 농업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 - 【붙임】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